

ESG위원회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피첨단소재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ESG"란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를 의미하며,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비재무적 가치를 포괄한다.
- ② "ESG 활동"이란 회사와 관련된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 (권한)

① 위원회는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.

② 심의·의결 및 보고 사항

가. ESG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

- ESG경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
- ESG중장기 목표의 설정

- 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

나. ESG위원회 보고 사항

- ESG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
-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

- 핵심 준법 리스크의 관리 등 준법통제에 관련된 중요 사항

다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고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 (구성 및 선임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그 중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 6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인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 3항에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0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며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지원부서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- ② 지원부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